

【 2 】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06. 3.

제출자 : 양주시장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의거 양주시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종 공공시설의 통합관리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화된 시설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05. 3. 2.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05. 7. 25.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설립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단 설립이 결정되어 공단의 설립·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가. 공단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시에서 전액 출자. (안 제4조)
- 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 5인의 이사와 감사 1인 구성. (안 제7조)
- 다.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안 제8조)
- 라. 위촉직 이사 및 공단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
- ※ 이사장 임기는 3년(1회 연임), 이사는 3년(연임 가능), 당연직 이사·감사는 그 재임기간 (안 제8·9·10·17조)
- 마. 공단의 중요사항 심의·의결을 위한 이사회(이사장·이사) 구성 (안 제15조)
- 바.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7인구성)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후보를 시장에게 추천 (안제19·24조)
- 사. 공단은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외 9개 사업을 시행 (안 제27조)
- 아. 시장은 공단의 대행사업 비용부담 및 업무를 감독 (안 제28조, 안 제37조)
- 자.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부칙 제1조)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공단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자본금은 현금 또는 현 물로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사항
 5. 임·직원에 관한사항
 6. 이사회에 관한사항
 7. 재무회계에 관한사항
 8. 공고에 관한사항
 9. 자본금에 관한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사항
 11. 조직 및 정원에 관한사항
 12. 기타 필요한 사항
- 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 2 장 임원 및 직원

제7조(임원) ①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5인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이사장) ① 공단의 이사장은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③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④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 ⑤시장은 공단사업의 경영평가에서 경영실적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

- 제9조(이사) ①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단,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②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이사는 시 총무국장 외 1인의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세무 및 회계를 포함한 공기업 등 관련 전문가 2인을 위촉직으로 구성한다.
 - ④위촉직 이사 2인중 1인은 양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고, 1인은 이사장이 추천한다.
 - ⑤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 제10조(감사) ①감사는 시의 감사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제11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②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이사장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은 시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①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자신의 이익과 공단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5조(이사회) ①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전술할 수 있다.

⑤이사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단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때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 3 장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

제1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단의 이사장 임명대상자를 추천

받기 위하여 이사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인
3. 당해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인

②시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 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1. 경영전문가
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공기업 경영에 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시장은 이사장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이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이사장이 임명될 때 까지 존속한다.

제20조(위원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

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21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시 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제22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

-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23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시의 공기업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 ②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 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이사장후보 추천) ①위원회는 공기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하고 최고의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이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 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천된 이사장 후보가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이사장 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다른 이사장 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사무협조) ① 위원회는 이사장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또는 당해 공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 업

제27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체육시설물 관리운영
2.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3.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운영
 4.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5. 장흥국민관광지 관리운영
 6.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7. 종량제봉투 판매사업
 8.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
 9.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10. 공설묘지 관리운영
 11.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단, 공설묘지 관리운영은 묘적부등 관련문서 정비 후 시행한다.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 규정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9조(사업구역) 공단의 사업구역은 양주시로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을 의뢰하는 경우, 당해 지역도 포함할 수 있다.

제30조(경영평가)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단의 경영 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는 영 제68조제2항 각호에 의한 관련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장 재무회계

제31조(사업연도) 공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2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되며,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통지침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3조(결산) ①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계리의 원칙) 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3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비용부담)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 6 장 감 독

제37조(감독) ①시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지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보고 및 검사등) 시장은 공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39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공단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0조(공무원의 파견·겸임) 시장은 공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1조(파견·겸임 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겸임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평정·관리한다.

제42조(공인의 비치) 공단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양주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4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제4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제반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자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④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월 이내에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공단의 최초 사업년도는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공단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